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89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353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준희, 송유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이민영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5. 2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35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5, 8~40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2. 28. 접수 제2565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1, 6,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접수 제2578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9, 16, 17, 19~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을 제안 내지 지시한 사실, ② 원고는 내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을 원하지 않았고, 원고의 처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원고는 2015. 12. 28. 인감변경을 신청하고 변경된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2015. 12. 28. 별지 목록 기재 2~5, 8~40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별지 목록 기재 1, 6,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과 망인으로부터의 상속문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 청결강박 등을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지적하였듯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불법으로 어떤 해약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 원고가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인 망인의 제안 내지 지시를 차마 거부하지 못한 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문제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강박행위에 의한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여 그 효력을 실효시킬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2. 5. 11.과 2022. 5. 19.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추가로 증명하기 위해 ‘별건으로 진행 중인 원고와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피고 이외의 다른 가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거나, ‘원고의 아내, 망인의 친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중 한명에 대한 증인신문 또는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에게 증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원고가 예정하고 있는 각 증거신청은 대부분 이미 서증으로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문자메시지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것이거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증을 제출하겠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공도일, 판사 오영상, 판사 최항석

별지